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5
----------	-----

제출연월일 : 2004년 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확보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2,494명 ⇒ 2,512명 (증18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93명 ⇒ 1,410명 (증17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60명 ⇒ 61명 (증 1명)
 -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494명”을 “2,512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393명”을 “1,410명”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60명”을 “61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3명은 2006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조례 제2723호, 2003. 1. 1) 제2조중 “2004년 12월 31일”을 “2007년 12월 31일”로 한다.

신 구조문 대비 표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p>제2조 (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2,494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1,393명</p> <p>2.~3. (생략)</p> <p>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60명</p>	<p>제2조 (정원의 총수) 2,512명</p> <p>1. : 1,410명</p> <p>2.~3. (현행과 같음)</p> <p>4. : 61명</p>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p>부 칙(2003. 1. 1 조례 제2723호)</p> <p>제2조(한시기구)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부 칙(2003. 1. 1 조례 제2723호)</p> <p>제 2 조 (한 시 기 구)..... ...2007년 12월 31일.....</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 (한시정원) ① - ⑤ (생략)

⑥ 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 ④ (생략)